

【 10 】 「양주시 실버인력뱅크」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번호		제출년월일	2009년 3월 일
		제 출 자	양 주 시 장

1. 요구이유

-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체계 구축과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「양주시 실버인력뱅크」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「양주시 실버인력뱅크」 설치 개요

- 근 거
 - 노인복지법 제24조(노인사회참여지원)
 - 경기도 노인복지과-512(2005.12.29.) “『실버인력뱅크』 운영계획
 - * 경기도 특색사업
- 설치시기 : 2009. 5월중
- 설치대상 : 1개소
- 실버인력뱅크의 기능
 -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교육훈련 및 노인취업 사후관리
 - 노인들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노인인력 정보 체계화(DB구축)
 - 민간일자리 개발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등
- 운영방법 : 관내 노인복지관계 기관에 위탁
 - * 경기도 지침 : 노인복지회관에 설치하되, 노인복지회관이 없는

경우 노인복지관계 기관에 설치 · 운영

- 사업비 : 67,300천원(도비 30%, 시비 70%)

나. 민간위탁 추진계획

- 모집방법 : 공개모집
- 모집시기 : 2009. 4월중
- 수탁기관 모집범위 : 양주시내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 - *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.
 - * 지원법인 제외
- 위탁기간 : 3년
- 수탁기관 선정기준
 - 사업계획의 적정성, 사업수행능력, 재정부담능력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 - 양주시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

다. 민간위탁 사무

-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교육훈련 및 노인취업 사후관리
- 노인들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노인인력 정보 체계화(DB구축)
- 민간일자리 개발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수행
-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

라. 위탁조건

-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안내 책자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
- 「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및 위 · 수탁 협약사항 준수
- 종사자 자격기준
 - 팀장 :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
 - 직원 :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
 - * 각 해당분야 업무분야별 유자격자 공개채용 원칙

- 위탁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없음.
-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의 준수.

마. 관계법령 발췌서 : 불임

- 노인복지법 제23조 (노인사회참여 지원)
-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
소관 실·과		가정복지과
제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가정복지과장 팽 옥 자
	담당 직위·성명	노인정책팀장 박 혜 련
	담당자 직위·성명	노인정책팀장 박 혜 련

[붙임]

관 계 법령 발 췌 서

□ 노인복지법

제23조 (노인사회참여 지원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,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,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